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47
----------	-------

발의연월일 : 2026. 5. 22.

발 의 자 : 채현일 · 이기현 · 허영
이해식 · 박정현 · 이광희
정태호 · 양부남 · 정춘생
이재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으로 시·도지사에게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체를 위임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해 대통령과 소방청장은 인사권이 전혀 없고, 시·도별로 각각 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임·재위임된 소방의 인사권은 우수한 성과를 낸 지휘관이더라도 근무지역에 따라 고위직으로의 승진기회 자체를 제한하고, 우수 지휘관의 시·도간 인사 교류와 균형 있는 배치를 어렵게 하면서, 높은 소방서장 비위 발생을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통령이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라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 등 인사행정 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인사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방 고위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지역과 상관 없이 능력 있는 우수 지휘관을 고위직으로 선발하고, 시·도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켜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14조의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소방준감으로의 승진임용 방법)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준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방준감으로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임용권자)</p> <p>① ~ ② (생략)</p> <p>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④ ~ ⑥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설 ></p>	<p>제6조(임용권자)</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u>다만,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조정 또는 소방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등 인사행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3(소방준감으로의 승진 임용 방법)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준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방준감으로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p>